

법무법인YK

가사상속& 가업승계센터



법무법인 YK
LAWFIRM YK

법무법인YK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

법무법인YK 소개

450여 명의 변호사, 31개 사무소, 하나의 YK

법무법인 YK는 2012년 설립 이래, '고객중심주의'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성공 사례를 쌓아온 변호사를 꾸준히 영입해 단기간에 대한민국 10대 로펌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진심을 다하며 성장해온 YK는 현재 의뢰인을 우선으로 하는 450여 명의 변호사와 31개 사무소를 통해 단 하나의 YK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YK만의 'One-Firm' 체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협업할 수 있게 하며, 전국에 균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약 1만 1천 건의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었던 법무법인 YK의 성장은 양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제반 업무에 시니어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과, 하나의 사안에도 종합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이혼, 상속, 조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One-Team을 이루어 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국내 메이저 로펌으로서 고객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권익 수호자로서 사명감을 품고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공익 사단법인 '옴음'을 출범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존경받는 법률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출범한 '옴음'은 제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이사장을 필두로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의 유족 측 공익 변호, 구례 수해 사건 피해 지역 주민 공익 변호 등 다양한 기부 활동과 교육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YK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법률전문가 그룹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YK 가사상속 & 기업승계센터

가사상속&기업승계 전문성

법무법인 YK의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는 기존 민·가사총괄부를 기업승계 대응을 위한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라는 특수조직으로 확대 및 개편하여 민·가사의 전반적인 업무, 가사 상속 및 기업 승계 등과 관련된 다양한 총괄 업무(이혼, 재산분할, 상속, 가족관계 분쟁, 신탁, 후견, 기업 승계, 지분 이전, 매각, 신탁 설정 등)에 대해 법적, 세무적, 경영적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으로 고객 맞춤형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YK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가족의 재산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승계 과정에서 필요한 지분 구조 조정, 경영권 승계, 기업상속공제 및 절세 전략상속 및 증여 법률 자문 등 가사상속 등의 전반적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및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구조를 정비,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전략 수립, 가족 간 분쟁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 활용 등 일평생 가꾸신 기업의 소유 및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법률 연구와 업데이트를 통해 시의성을 갖춘 법적 조언과 함께 항상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분야

가사상속

YK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는 가족의 재산 보호를 위한 상속재산분할부터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국제상속까지 상속에 관한 여러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가사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깊이있게 연구하여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법무법인 YK가 제공하는 가사상속 관련 주요 서비스

- 성년후견 신청, 후견계약 작성, 법정후견 결정 전 임시후견신청
- 유언서 작성, 검토
- 인지장애로 인한 증여무효소송
- 유언무효/유효확인 소송
- 상속재산의 조속한 분할 방안 검토 및 소송전 협의 대행
- 재산 쟁송전 가족관계등록부(혼인무효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입양무효소송)등의 정리를 위한 사전 처리
-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 등 각 소송의 연계적 진행과 주요 전략 모색

성년후견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심판절차

- 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및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 나) 당사자 의사 확인 또는 감정절차 진행,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확인합니다.
- 다) 성년후견개시심판 확정 후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이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 포괄승계

이 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 재산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므로, 상속 시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개념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 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방법에는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이 있습니다.

법정상속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3촌,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상속회복청구권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침해 회복을 위해 갖게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되며, 원고의 상속회복청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참칭상속인)는 판결에 따라 진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유류분을 침해당하여,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은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증여를 받은 사람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을 통해서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되었을 경우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됩니다. (「민법」 제1117조).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x 1/2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 x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x 1/3

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므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을 전혀 승계받지 않게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여전히 '상속인'으로 취급되므로, 여전히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받게 되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유언대용신탁

위탁자가 살아있을 때는, 위탁자가 수익자가 됨으로 신탁의 이익을 획득합니다.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사후수익권은 위탁자가 생전에 지정한 수익자가 갖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관리합니다. 유언장에 비해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유언장과는 달리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인 사망을 대비해 제2·제3의 상속인 설정이 가능하며 미성년 상속인이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상속받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금융사와의 신탁계약으로 유언을 대체할 수 있으며, 생존 시부터 자산신탁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 수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또는 수익자가 수인일 경우엔 수익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② 등기 필증(분실시 신분증 사본) ③ 주민등록초본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② 주민등록등본 ③ 후견사항 부존재 증명서 ④ 신탁원부 및 신탁계약서

국제이혼

국제이혼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국제 이혼 시, 어느 나라의 법에 의해 판단하는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제소해야 하는지 등을 알기 어려울 수 있는데,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외국인 부부 사이의 이혼>

- 한국인과 외국인, 외국인 부부 사이에는 이혼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한국과 실질적 관계가 있는 경우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합니다.
- 부부가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 법이 적용되고 국적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라면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되며, 부부가 국적도, 살고 있는 나라도 다른 경우라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됩니다.

기업승계

YK 가사상속&기업승계 센터는 가사, 상속, 조세,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기업승계 과정 전반에 걸친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대형로펌 등에서 다년간의 경력으로 경험이 풍부한 조세 전문가로 구성되어, 기업승계, 조세 관련 이슈에 대하여 고객에게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시합니다.



기업승계

기업승계란 기업의 소유 및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가족의 재산 보호를 위해 기업승계는 필수적이며,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서는 법적, 세무적, 경영적 측면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업승계 방식	증여 및 상속을 통한 승계	생전에 후계자에게 자산이나 지분을 (일부) 증여하거나 상속 절차를 통하여 승계하는 방식으로, 증여 및 상속 관련 절세전략 수립, 조세위험(Tax Risk) 발생시 적절한 대응 및 불복이 중요합니다.
	매각을 통한 승계	후계자에게 기업 지분을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 후 재구매하는 방식으로, 지분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분 공유를 통한 승계	후계자와 함께 지분을 나누어 공동 경영하며, 점진적으로 승계하는 방법입니다.
	가족 신탁을 통한 승계	가족 신탁을 설정하여 장기적인 경영권 승계를 계획하는 방식으로, 신탁의 구조 설계가 핵심입니다.

가업승계 조세

가업승계에 따른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시 약 50%로 OECD 가입국 중 2위를 차지할 만큼 높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통한 가업승계의 경우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할증율까지 적용되어 세율이 최대 60%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상이전을 통한 가업승계의 경우 승계 대상 재산에 내재하는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가업승계에 부과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과세이연, 이월과세,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의 제도가 있으나 업종의 제한, 사전, 사후요건 충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시의적절하게 가업승계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조세 자문을 비롯하여 다양한 세무조사, 가사상속&가업승계 과정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조세 쟁송(증여 개별 예시 규정이나 증여 추정, 의제 규정의 적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가액 증가분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주식 증여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과세 등)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합니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조세위험(Tax Risk) 사례

부의 이전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황별로 다양한 조세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철저한 계획 및 대비가 필요합니다.

-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사전, 사후요건 미충족, 미유지로 인한 양도세, 증여세 또는 상속세의 증액 경정
- 꼬마빌딩을 증여 또는 상속하면서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감정평가해서 증액된 해당 감정가액 기준으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과세
- 비상장 회사의 대표, 최대주주 등이 배우자 및 자녀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취득하게 한 뒤 해당 주식이 상장된 경우,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 회사의 대표가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다른 회사에 사업양수도 등을 하여 그 배우자 및 자녀의 소유지분이나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 포괄 증여 이론의 적용이나 과세

법무법인 YK가 제공하는 조세 관련 주요 서비스

- 조세부담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가업승계 방안 제시 및 실행
-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조세 자문
- 국제거래, 국제상속, 국제증여 등 국가 간 부의 이전거래에 따른 조세문제에 대한 자문
- 세무조사 대응
- 조세 쟁송

증여와 증여무효

『민법』 제 554조에 따른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YK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는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증여계약서의 검인, 취득세 고지서의 발급 등 증여와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와 다양한 관점에서의 자문을 제공해드립니다.

기업미승계



흔히 간과되지만 기업승계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기업 미승계입니다.

사업을 이어갈 적절한 후계자가 없거나 상속 예정자들이 사업을 이어갈 의사가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미리 치밀한 Exit 전략과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경영자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여 회사가 운영되던 경우라면 그 필요성은 더욱 강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YK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M&A, PEF(사모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하면서 경영을 PEF가 추천하는 전문가에 맡기고 PEF 투자자로서 투자 이익만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 상장을 통하여 회사 주식의 시가와 유동성을 확보하여 향후 처분 및 대응을 용이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주요 변호사 소개



배인구 대표변호사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및 대학원 석/박사(민법) 수료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25기)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서울지방변호사회 가사연수원장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사, 소년 전문법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각 지방법원 판사(1996~2007)
- 201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 대리인(이혼사건)
- 2021년 정목익 KCC글라스 회장 대리인(이혼사건)
- LG家 상속회복청구소송 세모녀 측 대리
- 유명 인플루언서 이혼소송 대리 외 다수의 이혼, 상속 재산분할 사건 소송 대리



김윤정 파트너 변호사 / 가정법원 법관 출신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관연구위원
-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언론중재위원회,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 사법연지원재단 등 다수 연구 참여
- 사법정책연구원 다수 출간
-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상속 관련 특별연수 다수 출강
- 서울지방변호사회 가사연수원, 대구지방변호사회 특별수 출강
- 채널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출연



한만수 대표변호사 / 조세법 전문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1)
- 제2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13기)
-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졸업(LL.M, 1991)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1999)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1983~1996, 2002~2007, 2018~2024)
- 한국세법학회 회장(2014~2016)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2013)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2009~2013)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9~2013)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7~2009)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5~2006)



권순일 대표변호사 / 대법관 출신

-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4기)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차장
- 대법관



김경 대표변호사 / 부장판사 출신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노동법 석사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서울지방법원 판사
- 청주지방법원 판사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원식 대표변호사

- 진주 동명 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26기)
- The George Washington 대학 LL.M.(석사)
- AIP(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NY 변호사 시험 합격
- 법무법인(유)광장(시니어 파트너 변호사) 증권금융, ECM 팀
- 교보증권 고문변호사 / 우정사업본부 펀드심의위원
- 대신자산운용 고문변호사 / 리딩증권 고문변호사
- 공무원연금공단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강경훈 대표변호사 / 이혼·형사법 전문 변호사

- 전주 상산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 졸업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40기)
- 해병대 특수수색대
- 법무법인YK 대표



정병실 파트너 변호사 / 부장판사 출신

- 광주송원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0기)
-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전주, 인천, 서울남부, 서울중앙,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각 판사 (2001-2014)
- 대법원 재판연구관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

주요 변호사 소개



송각엽 파트너변호사 / 부장판사 출신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사법고시 41회(사법연수원 31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건설전담, 경제·지재 전담, 민사신청 전담)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형사단독, 민사단독)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민형사합의, 신청합의)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경매, 가사단독)
- 대법원 재판연구관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합의)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행정합의 및 민사합소)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 및 노동·보건 전담)



임호진 이혼·형사법 전문 변호사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 변호사 시험 합격
-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재판연구관
- (주)넥스코리아 법무정책실
- 대법원, 수원고등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시 공익변호사
- 2022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2022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임우정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2013년~2024년 근무)



주승연 파트너 변호사 / 국세청 출신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사법) 석사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석 졸업(변호사 3회)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조세법) 수료
-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전담부/ 건설전담부)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2과 민사팀장/ 상속·증여세팀장
-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법인세팀장/ 송무과장
-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개인(소득·부가세) 팀장



조한나 가사·형사법 전문 변호사

-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졸업(공학 석사)
- Northwestern pritzker school of law, master of law(L.L.M)
-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 2019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형사법 전문 변호사
-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정회원
- 우리 특허법률사무소, (前) 법무법인 세아, (前) 로엘 법무법인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일반실무수습, 서울남부지방법원 심화실무수습
- 법무법인 총정/특허법인 총정 인턴
- SBS 공금한 이야기 Y, 모닝와이드 출연 / KBS뉴스 인터뷰
- MBC 생방송오늘의아침, 실화탐사대, PD수첩



이한나 상속 전문 변호사

- 김포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 시험 합격
- 2021 대한변협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은울 변호사
- 법무법인 송천 변호사
- 법무법인 천명 변호사
-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이준엽 조세 전문 변호사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조세법)
-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지방세학회 각 정회원
- 국세청 조세전문변호사 추천군 등재
- 202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 변호사
- 2019 법무부장관 표창(송무유공)
- 서울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금융, 조세 등 행정소송 담당)
- 창원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국가소송 담당)
- 법무법인 위즈 조세팀



이지애 가사법 전문 변호사

- 장성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무법인 로엘



주요 가족법인 설립 사례

가족법인 설립의 일반적 단계



1

기초자금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가족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증여
합니다. 이 때, 증여공제
한도액(미성년자 2,000만 원,
성년자 5,000만 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자본금 출자 및 법인 설립

부모가 보유한 자산을
현물출자, 부모 및 자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가족법인을 설립합니다.



3

부모의 자산을 가족법인에 이전

현금 출자 또는 대여,
영업권 양도, 부동산 현물출자
또는 매매 등의 방식으로
부모의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합니다.



4

자산운용에 따른 법인 자산가치 상승

가족법인의 자산운용에
따른 발생 수익이
주주인 자녀들에게
귀속됩니다.

자산 이전의 유형

현금출자 또는 대여

개인 명의로 부동산 매수 시 현금 보유 필요의 부담과, 매수자금 증여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가 매입 시장점

- 자녀들에게 비과세 범위 내 자본금 증여가 가능합니다.
- 개인보다 대출금 한도가 높은 법인 명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표이사의 자금을 법인에 대여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
 - 대표이사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합니다.
 - 위 채권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면 증여·상속세 부담액을 고정시키고,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상가 운용 시장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6.6%~49.5%의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9.9~26.4%)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당 등으로 법인자금 인출 시 근로소득, 양도소득, 배당소득 등 소득세가 한 번 더 발생하므로 자녀에게 다른 고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부담 커질 수 있습니다.

상가 양도 시장점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영업권 양도

개인사업자 아버지가 보유 중이던 영업권 매각 시 발생한 매각금액은 '기타소득'이 되며 이 때 기타 소득 중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 가족법인에 영업권 양도, 영업권을 수년에 걸쳐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현물출자 또는 매매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납부 및 법인에 대한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채권을 보유하는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매수한 자녀법인은 부동산 운용 및 가치상승에 따른 수익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후 대표가 사망 시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익 분여 방법

차등배당

소유한 주식 규모에 따라 배당금을 달리 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 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감자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수를 줄여 회사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자본금 감소, 회사분할, 합병 등을 목적으로 회사가 보유 중인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가사상속 Q&A

상속

Q.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상속을 미리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A.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실종신고를 받은 때 개시되게 되므로, 상속을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주기 위해서는,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법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와 아들인 저는 얼마를 상속받게 되나요?

A.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 또는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이들보다 50%를 더 상속받게 되므로, [아내인 어머니 : 자녀인 아들]은 [1.5 :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Q. 아버지의 재산, 빚만 상속을 피할 수도 있을까요?

A.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 또한 포함됩니다.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받게 되므로, 이들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Q.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어떻게 될까요?

A.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되었을 경우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됩니다. (『민법』 제1117조).

Q. 유류분반환청구 반드시 상속인 전체가 같이 해야 할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인 자신의 유류분부족액만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유류분 부족액 또한 상속인들마다 자신의 생전 특별수익액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개별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떻게 다른 건가요?

A.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므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을 전부 승계받지 않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여전히 '상속인'으로 취급되므로 여전히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받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므로 기간도와 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성년후견

Q. 후견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성년후견제도는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4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후견인의 역할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 1)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지속적으로 사무 처리 능력을 상실한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고, 그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2) **한정후견**: 사무 처리 능력이 일부 부족한 성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이 재산 관리와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보다 보호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 3) **특정후견**: 특정한 사무나 일시적인 도움만 필요한 성인을 위해 후견인이 임명되어 해당 사무에 대해 대리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중요한 재산 거래나 일회성 법적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 4) **임의후견**: 본인이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미래에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상황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후견계약을 통해 선택한 후견인이 본인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년후견제도는 개인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하여 법적 보호와 재산 관리를 도와줍니다.

Q.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A.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이나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 보호가 이루어지며, 재산이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신상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감독 하에 후견인이 활동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상속 Q&A

성년후견

Q. 성년후견제도는 언제부터 활용할 수 있나요?

A. 성년후견제도는 당사자가 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거나 고령으로 인해 재산관리가 어려운 경우, 법원을 통해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후견계약을 통해 미리 후견인을 지정할 수도 있으며, 이는 상속이나 기업 승계의 복잡한 절차를 사전에 대비하는 데 유용합니다.

Q.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나요?

A. 성년후견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상속이나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법적으로 대리하게 되면,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차이나 재산 분할에 대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법원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공정한 재산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Q. 가족 내에서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 가족 구성원이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재산 관리나 법적 판단을 할 수 없을 때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치매나 중증 질환을 앓는 부모님이 있으신 경우, 자녀가 후견인이 되어 부모님의 재산을 보호하고 법적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되며, 필요한 의료나 생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Q. 상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A. 상속을 준비할 때 상속인 중 한 명이 의사능력이 부족하거나 법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그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치매를 앓고 있거나 중대한 질병을 겪고 있다면, 후견인이 대신해 상속 절차를 진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재산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고령의 부모님이 후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나요?

A. 임의후견제도를 통해 고령의 부모님이 후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자녀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후견인이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가업승계

Q. 가업승계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업 리스크 관리, 경영권 분쟁 방지, 각종 세제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현재 지분구조 및 재무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증여세는 10년 주기로 과세되므로 가급적 미리 계획을 세워 사전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Q. 가업승계와 관련된 주요 세금은 무엇인가요?

A.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 또는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이들과 50%를 더 상속받게 되므로, [아내인 어머니 : 자녀인 아들]은 [1.5 :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Q. 아버지의 재산, 빚만 상속을 피할 수도 있을까요?

A. 주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가 문제되곤 합니다. 사업체가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적용 요건, 적용 후 사후관리 요건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도 활용 여부 및 적용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Q. 가업승계 시 가장 중요한 법적 요소는 무엇인가요?

A. 현 경영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시에도 공백 없이 기업이 운영될 수 있으려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구조 정비,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전략 수립, 가족 간 분쟁 방지를 위한 제도 활용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 가업 승계 과정에서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가족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가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면 가업 승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면 후견인이 경영자의 재산과 기업 운영을 대신 관리할 수 있어 가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자의 법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후견인이 사업 승계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Q. 가업 승계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나요?

A. 임의후견계약을 통해 경영자가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가 건강할 때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을 미리 지정해 두면, 향후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될 경우 후견인이 기업의 재산 관리 및 승계 절차를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연속성을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Q. 가업 승계 중 후견인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후견인은 경영자의 재산 관리와 법적 대리인으로서 가업 승계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대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자가 치매나 질병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이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적,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와 감동, 전국 곳곳에서 그대로! 범무법인 YK가 가장 먼저 다가옵니다.

Tel. 1688-0621

범무법인YK 전국 32개 사무소

서울 강남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범무법인YK

수원 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분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분사무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랑빌딩) 2층

대구 분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가사)

울산 분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분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분사무소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분사무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릉빌딩) 4층

의정부 분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5층

전주 분사무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분사무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분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복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분사무소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분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목포 분사무소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포항 분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구미 분사무소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진주 분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분사무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02~407호

원주 분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분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분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분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동탄 분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2층

강릉 분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 (동탄GT타워)